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검 토 보 고 서

2022. 8. 30.(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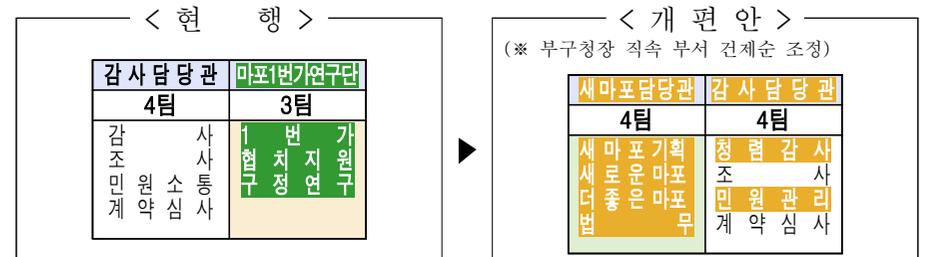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2. 8. 19.
- 회부일 : 2022. 8. 22. (의안번호 : 22 - 66)

2. 제안이유

- 민선8기 구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개편을 시행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재조정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부구청장 직속 : 1담당관 1단 7팀 → 2담당관 8팀
(△1단, +1담당관, +1팀)



- 부서 분리 : 노인장애인과 →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 부서 명칭변경 : 복지정책과 → 주민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년과 → 아동청소년과
- 팀 신설 : 어르신동행과 어르신지원팀, 장애인동행과 장애인시설팀
- 팀 분리 : 청년청소년팀 → 청년지원팀, 청소년지원팀
- 팀 이동 : (노인복지팀, 노인돌봄팀, 노인시설팀) 노인장애인과 →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자립팀)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동행과 (청년지원팀) 아동청소년과 → 관광경제국 좋은일자리과
- 팀 명칭변경 : 복지기획팀 → 생활복지기획팀, 돌봄지원팀 → 통합돌봄팀 복지지원팀 → 복지지원관리팀, 희망복지팀 → 희망복지지원팀 마포하우징팀 → 주거복지팀, 노인복지팀 → 어르신정책팀 노인시설팀 → 어르신시설팀, 노인돌봄팀 → 어르신돌봄팀 장애인복지팀 → 장애인정책팀, 여성정책팀 → 양성평등정책팀 보육행정팀 → 어린이집사업팀, 보육지원팀 → 어린이집지원팀 아동돌봄팀 → 아동친화팀, 출산다문화팀 → 1인가구지원팀

□ 관광경제국 : 5과 16팀 → 6과 21팀 (+1과, +5팀)

< 현행 >

관 광 과	일자리지원과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과	생활체육과
3팀	3팀	3팀	4팀	3팀
관광기획팀 관광사업팀 관광마케팅팀	일자리기획팀 고용안전팀 사회적경제팀	문화예술기획팀 문화사업팀 문화시설팀	지역경제지원팀 시장경제정보팀 생활경제보호팀	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 개편안 >

(※ 관광경제국 부서 건제순 및 문화누리과 팀 건제순 조정)

관광정책과	경제진흥과	문화누리과	일자리청년과	체육진흥과	교육정책과
3팀	4팀	3팀	4팀	3팀	4팀
관광정책팀 관광사업팀 마포순환열차팀	경제총괄팀 시장활성화팀 문화물품정책팀	문화누리기획팀 문화사업팀 문화시설팀	일자리지원팀 청년지원팀 사회적경제팀	체육정책팀 생활체육팀 체육시설팀	교육정책팀 평생교육팀 교과교육협력팀 도서관진흥팀

- 국 명칭 변경 : 관광일자리국 → 관광경제국
- 부서 이동 : 교육지원과 「관광경제국」으로 이동
- 부서 명칭변경 : 관광과 →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 경제진흥과 문화예술과 → 문화누리과, 일자리지원과 → **일자리청년과** 생활체육과 →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 교육정책과
- 팀 폐지 :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 팀 신설 : 관광정책과 마포순환열차팀
- 팀 분리 : 일자리기획팀 → 일자리지원팀, 일자리사업팀
- 팀 이동 : (청년지원팀) 약자와동행국 아동청소년과 → 일자리청년과 (고용안전팀) 일자리청년과 → 행정지원국 국민안전과 (교육센터팀, 도서관정책팀) 마포중앙도서관 → 교육지원과
- 팀 통합 : 교육정책과 교육혁신팀+교육센터팀 → 교육협력팀
- 팀 명칭변경 : 관광기획팀 → 관광정책팀, 관광사업팀 → 관광산업팀 지역경제팀 → 경제총괄팀, 시장지원팀 → 시장활성화팀 동물보호팀 → 동물정책팀, 문화예술기획팀 → 문화누리기획팀 일자리기획팀 → 일자리지원팀, 체육진흥팀 → 체육정책팀 교육기획팀 → 교육정책팀, 도서관정책팀 → 도서관진흥팀

□ 재정관리국 : 6과 25팀 → 6과 26팀 (+1팀)

< 현행 >

기획예산과	재무과	정수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4팀	3팀	5팀	4팀	4팀	5팀			
기예법경영통계	회산무계 재계지	재산관리 약출	세입금수납 38세금수1 38세금수2 세외통	총징징징 수1수 수2수 수납	재산세 1 2 인표	지방소득세 1 2 인표	자동차세 1 2 인표	토지행정 지적관리 지가조사 부동산관리 도로명주소

< 개편안 >

(※ 지방소득세과 팀 건제 순 조정)

디지털재정과	재무과	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부동산정보과			
5팀	3팀	5팀	4팀	4팀	5팀			
예경정정 공전정 영상	회산무계 재계지	재산관리 약출	세입금수납 38세금수1 38세금수2 세외통	총징징징 수1수 수2수 수납	재산세 1 2 인표	지방소득세 1 2 인표	자동차세 1 2 인표	토지행정 지적관리 지가조사 부동산관리 도로명주소

- 국 명칭 변경 : 기획재정국 → 재정관리국
- 부서 명칭변경 : 기획예산과 → 디지털재정과, 세무1과 → 재산세과
세무2과 → 지방소득세과
- 팀 이동 : (기획팀, 법무팀) 디지털재정과 → 새마포담당관
(전산운영팀 정보통신팀 영상정보팀) 행정관리국 전산정보과 → 디지털재정과
- 팀 명칭변경 : 경영통계팀 → 공기업팀, 토지행정팀 → 부동산행정팀
부동산관리팀 → 부동산거래관리팀

□ 도시환경국 : 6과 26팀(변동없음)

< 현 행 >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4팀	5팀	5팀	4팀	4팀	4팀
주택관리 임대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구단위 도시재생 전략사업	건축관리 건축민원 건축민원 건축민원 건축민원 건축민원 건축민원 건축민원	재난안전 고물정비 건축안전 건축안전 건축안전 건축안전 건축안전 건축안전	환경행정 환경지도 맑은대기 에너지관리	공원기획 500만그루 조성경 자연생태

< 개 편 안 >

(※ 도시환경국 부서 건제 순 조정)

주택상생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5팀	4팀	5팀	5팀	4팀	3팀
공동주택 임대사업 재개발 재건축 보상주택	청소행정 재활용관리 지역청결 시설장비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관리 역세권개발 전략사업	건축계획 건축지도 건축운영 건축안전 건축안전 건축안전 건축안전	환경정책 환경지도 대기질관리 에너지관리	공원정원 자연생태

- 부서 이동 : 도시안전과 「행정지원국」으로 이동
청소행정과 「도시환경국」으로 이동
- 부서 명칭변경 : 주택과 → 주택상생과, 청소행정과 → 자원순환과
건축과 → 건축지원과, 환경과 → 맑은환경과
- 팀 이동 : (건축안전센터팀) 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 → 건축지원과
- 팀 폐지 : 건축지원과 공공디자인팀, 공원녹지과 500만그루조성팀
- 팀 신설 : 주택상생과 보상주택팀

- 팀 명칭변경 : 주택관리팀 → 공동주택지원팀, 재개발팀 → 재개발지원팀
재건축팀 → 재건축지원팀, 자원재활용팀 → 재활용관리팀
청소시설팀 → 시설장비팀, 지구단위팀 → 도시관리팀
도시재생팀 → 역세권개발팀, 건축관리팀 → 건축계획팀
건축민원1팀 → 건축지도팀, 건축민원2팀 → 건축운영팀
환경행정팀 → 환경정책팀, 맑은대기팀 → 대기질관리팀
공원기획팀 → 공원팀, 조경팀 → 가로정원팀

□ 교통건설국 : 5과 21팀 → 5과 22팀 (+1팀)

< 현 행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5팀	4팀	3팀	5팀	4팀
교통관리 주차장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교통개	주차단속 주차관리 주차세입 운수관리	건설행정 건설정보 가로정비	도로계획 도로관리 도로관리 지하안전 도로조	하치기 하 수수전 천

< 개 편 안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보행행정과	도로개선과	물관리과
5팀	4팀	4팀	5팀	4팀
교통관리 주차장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교통개	주차단속 주차관리 주차세입 운수관리 운수질서관리	보행행정 보상건설 가로정비 광고물	도로계획 도로관리 도로관리 지하안전 도로조	하치기 하 수수전 천

- 부서 명칭변경 : 교통지도과 → 주차관리과, 건설관리과 → 보행행정과
도로과 → 도로개선과, 치수과 → 물관리과
- 팀 이동 : (광고물팀) 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 → 보행행정과
- 팀 명칭변경 : 주차장시설팀 → 주차장조성팀, 운수관리팀 → 운수질서관리팀
건설행정팀 → 보행행정팀, 건설보상팀 → 보상건설팀

□ 보건소 : 4과 16팀 (변동없음)

〈 현 행 〉				〈 개 편 안 〉			
보건행정과	위 생 과	건강증진과	의 약 과	보건행정과	위 생 과	건강동행과	의 약 과
4팀	4팀	4팀	4팀	4팀	4팀	4팀	4팀
보건기획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건강지원	식품위생 식품안전 위생지도 공중위생	건강증진 방문보건 모자보건 건강생활	의약 약검보 건강지소	보건기획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마음건강	식품위생 식품안전 위생지도 공중위생	건강동행 방문보건 모자보건 건강생활	의약 약검보 건강지소

- 부서 명칭변경 : 건강증진과 → 건강동행과
- 팀 명칭변경 : 건강지원팀 → 마음건강팀, 식품위생팀 → 식품행정팀
위생지도팀 → 위생관리팀, 모자보건팀 → 햇빛센터팀

□ 사업소 : 4팀 → 2팀 (△2팀)

〈 현 행 〉		〈 개 편 안 〉	
마포중앙도서관 4팀 도서관정책 중앙도서관 소금나루도서관 교우센터		마포중앙도서관 2팀 책문화동행 소금나루분관	

- 팀 이동 : (도서관정책팀, 교육센터팀) 마포중앙도서관 → 관광경제국 교육정책과
- 팀 명칭변경 : 중앙도서관팀 → 책문화동행팀, 소금나루도서관팀 → 소금나루분관팀

□ 동주민센터 : 16동 48팀 (변동없음)

〈 현 행 〉		〈 개 편 안 〉	
동 주민 센터 3팀 행정민원 복지지 복지		동 주민 센터 3팀 행정민원 복지지 복지	

- 팀 분리 : 행정민원팀 → 행정지원팀, 통합민원팀
- 팀 통합 : 통합민원팀+복지2팀(일부) → 통합민원팀
복지1팀+복지2팀(일부) → 주민복지팀
- 통합민원팀 분리, 보편적 복지민원 일부 업무 통합민원과 통합 하여
동주민센터 팀 전면 개편 예정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3조

5. 검토보고

■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의 조직 개편 목표를 살펴보면
민선8기 ‘약자와 동행’ 구정철학을 반영한 행정조직 재설계, 구민
의 눈높이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기능 재편,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연계하고 성공적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재정비하여
구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개편을 시행하고, 변
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재조정 등을 실시하고자 하
는 것임
- 본 조례안의 조직 개편 개편방향은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관련 조직 강화·확대/
‘약자와동행국’ 으로 명칭 변경 및 건제순 조정으로 상징성 부여/
‘어르신동행과’ 와 ‘장애인동행과를 분리·신설하여 전문성 강화/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기능 개편/
- 구정방향 나침반 및 정책추진 동력 강화를 위한 ‘새마포담당
관’ 신설/ 공약사업 추진 및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
광정책과’ 재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내 주민재정착 지원을
위한 ‘보상주택팀’ 신설하고,

- 흩어져있는 주요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직기능 정비/ 교육·도서관사업 연계 및 교육정책 일원화를 위한 팀 이동·재편/ 청년과 청소년 업무를 분리하고 각각의 업무를 총괄하는 ‘청년지원팀·청소년지원팀’ 신설/ 출산장려와 모자보건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햇빛센터팀’ 신설하는 등
- 부서 내 업무 협업 및 유연성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 재편하여 중대재해, 민방위 등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구민안전과’ 로 변경 및 국 이동/ 건축물 안전지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건축안전센터팀’ 부서 이동/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관련업무 협업을 위한 ‘광고물팀’ 부서 이동하고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능이 유사한 조직의 통폐합 추진/ 협치 및 주민참여예산 업무축소에 따른 업무이관·주관부서 변경/ 500만그루조성사업 축소 및 기능이 유사한 ‘조경팀’ 과 업무통합/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정보과 폐지 및 주무과로 업무 재편/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및 복지업무 일원화를 위한 팀 개편을 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무를 상징하는 부서·팀 명칭으로 재조정하였음.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별표 1 ~ 8참조

6. 검토의견

- 본 일부조례안은 민선8기 구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및 기능 재조정을 실시하고, 기존 6국 1담당관 1단 34과 144팀에서 6국 2담당관 34과 146팀으로 변경하고 사업소 4팀에서 2팀, 국개편 4국 명칭변경, 부서개편 신설1개, 분리1개, 폐지2개, 명칭변경24개, 팀신설6개, 분리4개, 통합4개, 폐지

6개, 부서간 팀이동 17개를 재조정과 「지방자치법」이 2022. 1. 13.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상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3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기 조정하는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된 것으로 위반사항이 없는 것 사료됨.

- 중대재해, 민방위 등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구민안전과’ 로의 변경은 안전사고는 구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업무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지원국으로 이동배치한 점,

‘어르신동행과’ 와 ‘장애인동행과를 분리·신설하여 각각 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책 수립과 추진 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점,

500만 그루 조성사업을 축소하여 가로정원팀으로 업무통합 및 명칭변경으로 새로운 나무식재보다 기존 수목관리를 통한 장기적 기후변화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예산낭비 줄일 수 있는 실효성을 마련한 점,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및 복지업무 일원화를 위한 팀개편으로 복지업무의 팀별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조직의 문제점을 잘 파악한 적절한 팀개편이라 판단됨.

- 다만, 약자와동행국 신설에 따른 국 명칭에서 약자라는 단어가 특정계층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거부감이 있다는 점은 다양한 의견을 통해 보편적인 용어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광경제국에 교육정책과의 배치는 마포구 의회가 관장하는 행정, 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볼 때 한쪽 위원회로 특정부서의 쏠림현상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볼 때 교육정책과의 국 배치는

제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의 명칭 변경과 도시환경국으로 이동한 개편안은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보존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국가정책의 방향과 부합되지만 동 주민센터의 청소민원이 빈번히 발생한 점을 비추어볼 때 동 주민센터를 관장하는 소관 국이 분리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조직의 자체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된 점과 제2항에 국이나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된 점을 비추어 볼 때 팀 단위의 명칭은 집행부 정책의 행정방향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지만 구민이 알기 쉬운 보편적 용어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행정기구 개편 후 사후조치가 늦지 않도록 구청 홈페이지, 청사 주변 안내표시, 공사현장 표기 등 일선에서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민원업무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별표 1] 조직개편 총괄

구 분	본청	보건소	사업소	의회사무국	동	정원
현 재	6국 1담당관 1단 34과 144팀	1소 4과 16팀	1소 4팀	1사무국 4전문위원 4팀	16동 48팀	1,448
개편안	6국 2담당관 34과 146팀	1소 4과 16팀	1소 2팀	1사무국 4전문위원 4팀	16동 48팀	1,448
증·감	△1단, +1담당관, +2팀	-	△2팀	-	-	-

※ [별표 2] 국 개편 : : 4국 명칭변경 및 기능 강화, 편제 조정

현행	개편안	사유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국	조직 전체 행정업무 지원에 방점을 두고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명칭변경
복지교육국	약자와동행국	구정철학 및 복지분야 강화를 반영하기 위한 명칭변경
관광일자리국	관광경제국	관광산업 경쟁력 및 경제분야 강화를 표현하기 위한 명칭변경
기획재정국	재정관리국	기획업무 이관을 반영하고 구 재정업무 총괄을 명시하기 위한 명칭변경

※ [별표 3] 국간 부서 이동 : 3과

부 서	국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청소행정과	행정관리국	도시환경국	업무 성격에 따라 도시환경국 이관
교육지원과	복지교육국	관광경제국	국간 균형을 유지하고 도서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간 부서 이동
도시안전과	도시환경국	행정지원국	긴급 재난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간 부서 이동

※[별표 4] 부서 개편 : 신설 1, 분리 1, 폐지 2, 명칭변경 24

구분	현행	개편안	사유
신설	-	새 마 포 담 당 관	주요사업 기획·조정 기능 등 부여 및 정책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부서 신설
분리	노인장애인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기존 노인장애인과 업무과중 해소 및 복지 수요별 전문성 강화
폐지	마포1번가 연구단	-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부서 폐지 및 업무 재배치
	전산정보과	-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부서 폐지 및 주무부서로 업무 재배치
명칭변경	총무과	행정지원과	행정업무 지원에 방점을 두고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명칭 변경(노조 요청사항)
	홍보과	홍보미디어과	행정기관과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쌍방향 소통과 미디어의 중요성을 반영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부서의 사업목표 및 방향을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복지정책과	주민생활복지과	저소득 주민계층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미를 표명
	여성가족과	가족행복지원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과 양성평등을 내포하는 명칭으로 변경
	아동청년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업무 이관에 따라 주요사업 지원대상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
	교육지원과	교육정책과	도서관사업을 포함하여 교육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의미를 표명
	관광과	관광정책과	공약사업 추진 등 관광정책의 강화 및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함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청년과	양질의 좋은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
	문화예술과	문화누리과	모든 구민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
	지역경제과	경제진흥과	경제분야에 대한 적극적 행정기능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명칭 변경
	생활체육과	체육진흥과	구민건강과 직결되는 체육사업 전반에 대한 진흥을 위한 명칭 변경

구분	현행	개편안	사유
	기획예산과	디지털재정과	기획·법무 업무의 다른 부서 이관 및 전산 업무 편입에 따른 명칭 변경
	세무1과	재산세과	부서업무에 대한 구민들의 직관적 이해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
	세무2과	지방소득세과	부서업무에 대한 구민들의 직관적 이해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
	주택과	주택상생과	구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 표명
	건축과	건축지원과	구민을 지원하는 의미의 건축업무 추진 표현
	도시안전과	구민안전과	어떤 상황에서도 마포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명
	환경과	맑은환경과	환경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맑은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 표명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과	부서업무에 대한 구민의 직관적 이해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
	건설관리과	보행행정과	부서의 업무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도로과	도로개선과	도로계획 및 보도관리 등 부서업무 특성을 고려한 명칭 변경
	치수과	물관리과	해당 부서의 전반적 업무 표현 및 서울시 직제를 고려한 명칭 변경
	건강증진과	건강동행과	모든 구민의 평생건강을 위해 구가 동행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함

※ [별표 5] 팀 신설 및 폐지 : 신설 6, 분리 4, 통합 4, 폐지 6

구분	현행	개편안	사유
신설	-	새로운 마포	구정방향 설정, 공약사업 및 구민 밀착사업 발굴·기획을 추진하기 위한 팀 신설
	-	더 좋은 마포	주요사업 추진상황 분석 및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팀 신설
	-	어르신지원	어르신정책 사업을 세분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팀 신설
	-	장애인시설	장애인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시설 업무를 분리하여 팀 신설
	-	마포순환열차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
	-	보상주택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
분리	총무	행정지원	직원들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팀 분리
	자치행정	동행정 동청사관리	동청사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노후화·복합화에 따라 전문관리를 위한 팀 분리
	청년청소년	청년지원 청소년지원	청년·청소년 업무증가에 따라 업무를 분리하여 대상자별 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
	일자리기획	일자리지원 일자리사업	일자리기획팀 업무를 일자리사업 주체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
통합	인력개발 대외협력	교육후생	효율적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 내 팀 통·폐합
	마을자치 주민협력	자치협력	행정환경 변화 및 효율적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 내 통·폐합
	전산운영 정보기획	전산운영	효율적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 내 팀 통폐합
	교육혁신 교육센터	교육협력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가 밀접한 팀 이관·통합
	1번가	-	마포1번가연구단 폐지에 따른 팀 폐지
	협치지원	-	마포1번가연구단 폐지에 따른 팀 폐지
폐지	구정연구	-	마포1번가연구단 폐지에 따른 팀 폐지

구분	현행	개편안	사유
	관광마케팅	-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 재배치 및 팀 폐지
	공공디자인	-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 재배치 및 팀 폐지
	500만그루조성	-	효율적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 내 팀 통폐합

※ [별표 6] 부서 간 팀 이동 : 17팀

팀	소속 부서		사유
	현행	개편안	
기획 법무	기획예산과	새마포담당관	주요사업 기획·조정·법적검토 등을 담당하는새마포담당관 신설
전산운영 정보통신 영상정보	전산정보과	디지털재정과	전산정보과 폐지 및 업무추진 효율성을 위하여 주무부서로 편입
민방위 고용안전	자치행정과 일자리지원과	구민안전과 구민안전과	안전 전담부서 개편에 따른 팀 재배치 안전 전담부서 개편에 따른 팀 재배치
노인복지 노인돌봄 노인시설	노인장애인과	어르신동행과	부서 분리·신설에 따라 관련 부서에 팀 배치
장애인복지 장애인자립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동행과	부서 분리·신설에 따라 관련 부서에 팀 배치
청년지원	아동청년	일자리청년과	청년·청소년 업무 증가에 따른 팀 분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부서로 팀 이동
도서관정책 교육센터	마포중앙도서관	교육정책과	교육부서에서 도서관정책 및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팀 이동
건축안전센터	도시안전과	건축과	부서 내 협업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 관련부서로 팀 이동
광고물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부서 내 협업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 관련부서로 팀 이동

※ [별표 7] 국·부서간 업무이동(팀 이관 제외)

부서		이관업무
현행	개편안	
복지교육국	관광경제국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
마포1번가연구단	새마포담당관	정책실명제, 제안제도, 구정정책 연구기획 등 업무
	자치행정과	지역사회혁신계획(협치) 관련 업무
	디지털재정과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업무
총무과	새마포담당관	구의회 협력 관련 업무
일자리지원과	구민안전과	중대산업재해예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
여성가족과	건강동행과	출산장려 및 출산축하금 관련 업무(햇빛센터팀)
건축과	보행행정과	간판개선사업 업무(광고물팀)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녹색어머니회 관련 업무

※ [별표 8] 팀 명칭 변경 : 63팀

부서명	현행	개편안	부서명	현행	개편안	
새마포담당관	기획	새마포기획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체육정책	
감사담당관	감사	청렴감사	교육정책과	교육기획	교육정책	
	민원소통	민원관리		도서관정책	도서관진흥	
행정지원과	총무	행정지원	디지털재정과	경영통계	공기업	
	인사	인사혁신		부동산정보과	토지행정	부동산행정
	인력개발	교육후생			부동산관리	부동산거래관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동행정	주택상생과	주택관리	공동주택지원	
홍보미디어과	홍보기획	홍보		주택상생과	재개발	재개발지원
	뉴미디어	미디어채널			재건축	재건축지원

부서명	현행	개편안	부서명	현행	개편안
	고용안전	중대재해예방			
민원여권과	민원총괄	민원행정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	재활용관리
주민생활복지과	복지기획	생활복지기획		청소시설	시설장비
	돌봄지원	통합돌봄	도시계획과	지구단위	도시관리
	복지자원	복지자원관리		도시재생	역세권개발
	희망복지	희망복지지원	건축지원과	건축관리	건축계획
생활보장과	마포하우징	주거복지		건축민원1	건축지도
어르신동행과	노인복지	어르신정책	건축지원과	건축민원2	건축운영
	노인시설	어르신시설		환경행정	환경정책
	노인돌봄	어르신돌봄	맑은환경과	맑은대기	대기질관리
장애인동행과	장애인복지	장애인정책	공원녹지과	공원기획	공원
가족행복지원과	여성정책	양성평등정책		조경	가로정원
	보육행정	어린이집사업	교통행정과	주차장시설	주차장조성
	보육지원	어린이집지원	주차관리과	운수관리	운수질서관리
	출산다문화	1인가구지원	보행행정과	건설행정	보행행정
아동청소년과	아동돌봄	아동친화	보행행정과	건설보상	보상건설
관광정책과	관광기획	관광정책		보건행정과	건강지원
	관광사업	관광산업	위생과	식품위생	식품행정
경제진흥과	지역경제	경제총괄		위생지도	위생관리
	시장지원	시장활성화	건강동행과	모자보건	햇빛센터
동물보호	동물정책	마포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책문화동행
문화누리과	문화예술기획		문화누리기획	소금나루도서관	소금나루분관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지원	일자리지원			

※ [별표 9]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 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 분장을 시·도와 시·군·구 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 고

1. 시·군·구별 실·국의 수는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10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8.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1개의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실·국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그 존속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실·국의 폐지 또는 존속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 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

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 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의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대해 그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모든 구
 - 나. 가목 외의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구 중 1개의 구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